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김태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9. 3. 18.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산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산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 시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상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을 위해 안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산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위원회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 1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시정소식지 · 인터넷신문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추연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9. 3. 18.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정소식지 · 인터넷신문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시정소식지의 제호를 참신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식지의 구독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안산톡톡”으로 인터넷 신문의 명칭을 “e-안산톡톡”으로 변경함.(제2조)
-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위촉 자격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함.(제7조)
- 편집위원회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조의2)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제호를 시민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식지의 구독률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약 1개월간 공무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여 1,271건을 접수, 3차까지의 심의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호를 선정하였으며,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 구독률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추연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9. 3. 19.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자치 활성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고문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공석이나 해촉 등 결원으로 인해 선출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임기의 기산일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함. (제17조의2).
- 제17조의2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은 2019년 7월 1일로 하며, 2년마다 갱신하여 적용 함 (제17조의3).
- 임기의 산정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7조의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제20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고문의 임기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의 기산일은 2019년 7월 1일로 하며, 2년마다 갱신하여 적용토록 한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나,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에 있어 각 동별로 특성이 있어 장단점은 나타날 수 있겠으며, 위원의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타 단체 조례에도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김진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9. 3. 18.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개방 확대를 통해 공공자원의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 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이용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록구 상록시민홀 및 상록구, 단원구 합창단 연습실을 토, 일요일에도 개방하도록 함.(안 별표 2)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별지 『별표2』에 제11조 관련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에 현재 주말 대관이 없는 상록구청 시민홀 및 합창단 연습실과 단원구청 합창단 연습실을 토·일요일에도 개방하여 시민들이 사용토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 공공시설의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제공으로 주말에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이용수단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 개정 후 담당부서에서는 사용실적을 분석하여 주말에 지속적인 대관이 있을 경우 휴일 근무자 근무방법 개선 및 보강 검토가 필요할 것임.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나정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9. 3. 18.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안산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1조 ~ 제3조)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평화통일 기반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회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1조)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2조 ~ 제14조)
- 보조금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표창,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제1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남북관계가 화합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장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평화통일 교육 등 통일 기반조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통일 기반조성위원회 15명 이내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 30억 원을 조성하고자 규정 하였고, 제5장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 우리시에서는 남북관계가 화합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래 통일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에서 조례제정의 합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으나, 2018년 말 현재 10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있음.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3. 12.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됨에 따라 2019. 7. 1.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항에 명시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 현행 수수료 기준 중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수수료 기준 중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때 기준은 적용되는 건이 없으므로 삭제 (안 제5조 제1항)
- 수수료감면 해당 사유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안 제8조 제1항 제11호)

3.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제3조와 관련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기준 중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법률 제15270호로 2017년 12월 19일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법률에 표기된 “장애 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를 “장애인” 으로 “장애등급” 을 “장애정도” 로 하는 등의 사항으로, 이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3. 12.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
- 도시농업 업무의 일부를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법인) 등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도시농업 정의 확대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3조).
- 2차(2019~2023) 도시농업육성계획에 의거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구현을 통한 도농상생의 기반 마련 (안 제5조).
-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일정자격을 갖춘 개인, 단체, 법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 2).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

부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사항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제7조 “도시농업위원회” 및 제12조의2 “사무의 위탁”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신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3조(정의)제1호 개정사항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양봉을 포함한 곤충의 사육도 도시농업에 포함되므로, 개정안 중 “재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활용한 농업활동으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활용한 농업활동으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조제1호 다목에 양봉을 포함한 곤충사육도 도시농업에 포함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3. 12.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청년, 청년배당, 지역화폐에 대한 용어 정의
- 지급대상(안 제4조)
 -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다만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
- 지급액 및 지급방법(안 제5조)
 -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안 제6조)
 -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며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형식 및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 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업무협의를 경기도에서 요청하였으며,
-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2019년도에 도비 78억 3,600만원과 시비 33억 5,800만원, 총 111억 9,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4년간 44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청년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비용 추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청년배당은 자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부칙 제2조(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청년배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방법의 적용례를 둔 것으로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지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로 “제5조의 규정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수정안	비고
<p>부 칙</p> <p>제1조 (생 략)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 칙</p> <p>제1조 (생 략) 제2조(지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2조의 내용은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의 적용례를 둔 것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가 해당할 것으로 보임</p>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3. 12.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그 동안 각각 운영되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통합하여 지역 공동 관심사인 문화관광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명칭 :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 구성도시 :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 기 능
 -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조직구성 : 회장 1, 부회장 1명 및 위원
 - 임원선출 : 위원 중 호선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회 의

- 정기회의 : 홀수 달 세 번째 수요일, 규약 3조의 구성순서에 의거
 시별 윤번제 개최
- 임시회의 : 필요시 소집

○ 자문위원

- 역할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
- 위촉 : 협의회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

○ 경비부담

- 부담금 10,000천원(협의회 운영비, 연구용역, 자문비 등)
-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부담금 필요 시 공동 분담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통합하여 지역 공동 관심사인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3. 12.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2018. 12. 18.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 부부공동육아를 실현하기 위해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를 신설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또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중 20년 이상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및 정비하고,
- 공무원의 가족 중 군입영이 확정된 사람이 있을 경우 군 입영일 행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가족 간 화목한 분위기 조성 및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표준안에 맞게 내용을 수정(삭제) · 신설

-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복무에 관한 위임규정 근거를 조례에 반영(안 제1조)
- 2)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 3) 출장공무원 규정 사항 삭제(안 제8조)
- 4) 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정비(안 제13조의2, 별표4)
 - 특수경력직 외에 유사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연가일수를 가산 할 수 있도록 함
- 5)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사항 반영(안 제14조제6항 신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근거 규정 마련
- 6) 연가일수 공제를 개정된 복무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수정(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 7) 공가 사항 삭제(안 제17조)
- 8) 특별휴가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규정 사항 정비 반영(안 제18조)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5일→10일)(별표 3)
 - 육아시간 확대 <생후 1년 미만, 1일 1시간 → 만 5세 이하, 1일 2시간>(안 제18조제5항)
 -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운영 사항 규정(안 제18조제14항)
 - 복무규정과 동일내용으로 규정된 조항 삭제 :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난임치료, 모성보호시간

(안 제18조 제2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휴가사용법 정비(안 제18조제8항)

1)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일수 확대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기존 15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기존 15일)

2) 확대된 휴가일수 및 장기재직 휴가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분할 횟수 정비

- 기존) 4회 분할 사용 가능

- 변경) 1회 3일 이상 사용, 연2회까지 사용 가능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 잔여일수 사용 가능

3)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휴가일수 보장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를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하는 단서조항 삭제

○ 군 입영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15항 신설)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입영일 특별휴가’ (입영당일 1일) 신설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 신설 (안 제18조제16항 신설)

- 100일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에게 5일의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 부여

○ 기타 사항 정비

1)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근거규정 정비(안 제12조제2항)

-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폐지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근거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으로 개정
- 2) 법률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6조제1항)
-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용어에 맞게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정비

3. 검토의견

- 2018. 12. 18.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 삭제, 신설하고, 장기 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휴가사용법을 정비하였으며, 군입영일 특별 휴가 신설 및 저 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산후 조리 휴가를 신설하고, 법률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음
-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또한 제7조의6제1항(특별휴가)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입법예고 에서는

2019. 1. 29. ~ 2. 18. 20일간 예고 시 3건의 의견이 제출 되어, 1건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의견도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게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 어지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가를 신설 또는 확대하는 것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제처 발행 2018.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거 제3조 의2(비밀엄수)조항에 검토 보고서와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용어 표현에 따라 수정 검토가 필요하며, 제18조제15항 군입영일 특별휴가도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형제·자매까지의 휴가는 무분별한 확대로 보일 수 있어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	수정안	비고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u>사용하여서는 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u>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u>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u>사용해서는 안 된다.</u>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u>사항</u>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u>사항</u> 4. <u>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u> 	<p>2018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발행)에 따라 단서 조상 첨부 및 법령 용어의 표현에 따라 수정</p>
<p>제18조(특별휴가)</p> <p>⑯ 공무원은 <u>자녀 및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제18조(특별휴가)</p> <p>⑯ 공무원은 <u>본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병역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근거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분별한 휴가 확대로 보여 질 수 있음</p>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3. 12.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표준 조례안 기준 제시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 및 체계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지대본 운영단계 변경 (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대본 설치목적 변경 (안 제2조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재난 예·경보 실시와 위기경보 발령 구분 (안 제19조 및 제20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대본 구성 변경 (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변경 (안 제9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재난대응 필수 협업체계(13개 협업기능) 반영 (안 제4조제1항제7호 및 별표1 실무반의 임무).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상위 법령 개정과 관련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에 주관을 두었음.
-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대책본부의 기능·구성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이 기존 조례와 달리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빠른 시간 내 대책본부 구성이 가능해 질 것임.
-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실무반 편성기준을 세분화 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각 반별로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난별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심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위기경보의 발령요청과 예보·경보의 실시 등의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 그동안 조례의 미비로 인하여 재난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해소되어 향후 재난관리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제처 발행 2018.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거 검토하여 용어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복되는 조항 정비 및 상위법 명시 등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검토안

개 정 안	검 토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 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u></p> <p style="text-align: center;"><u>“지역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을 말한다</u></p>	<p>“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정의 필요</p>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p> <p>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u></p> <p>2.~5. (생 략)</p> <p>6. <u>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u></p>	<p>조항의 제목(조문명)을 수정하고, 설치근거 조항을 명시</p> <p>제2조(정의)에서 안산시 관할 구역으로 한정하였기에 일부 문구 삭제</p> <p>상위 법령 근거조항 명시</p>

개정안	검토안	비고
7. <u>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u>	7.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	상위 법령 근거조항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업무 추가
8. (생략)	8. (개정안과 같음)	
<u>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생략) 1. 본부장 :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2~6. (생략) ③ (생략)	<u>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u> ② (개정안과 같음) 1. 본부장 : <u>시장</u> 2~6.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2조에서 약칭하여 삭제 제3조에서 약칭하여 삭제
<u>제4조(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생략)</u>	<u>제5조(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개정안 제4조와 같음)</u>	
<u>제5조(직무대행)제3조 제2항.....</u>	<u>제6조(직무대행)제4조 제2항.....</u>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생략)	(삭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야 하므로 삭제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생략)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검토안	비고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생 략) 1.자연재난 : <u>별표 4</u> 2.사회재난 : <u>별표 5</u> ② (생 략)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1.자연재난 : <u>별표 3</u> 2.사회재난 : <u>별표 4</u> ② (개정안과 같음)	사무의 전결 별표 3 삭제로 별표 변경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u>제3조제3항에</u> 3~5. (생 략) ③ (생 략)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u>제4조제3항에</u> 3~5.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조 변경에 따른 수정
제10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u>제3</u> <u>조제3항에</u> ② (생 략)	제10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u>제4</u> <u>조제3항에</u> ② (개정안과 같음)	조 변경에 따른 수정
제11조 ~ 제12조 (생 략)	제11조 ~ 제12조 (개정안과 같음)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 제15조 (생 략)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 제15조 (개정안과 같음)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 (생 략)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재난현장 조치) ①본 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 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제17조(재난현장 조치) ①(삭 제)	법 제17조제1항에서 지역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권한을 정하고 있 으므로 원안 제1항을 삭제

개정안	검토안	비고
<p>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삭제)</p>	<p>법 제38조제4항에서 명시된 내용으로 삭제</p>
<p>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p>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삭제)</p> <p>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p>재난 예보·경보 권한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 제38조의2에서 명시된 내용으로 삭제</p> <p>1항 삭제에 따른 상위 근거 조항 명시</p> <p>상위법령에서 위험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위임한 사항이 없음. 재난관리책임 기관 중 “안산시(안산시장)” 가 상급기관에 대표로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p> <p>문구 수정</p>

개정안	검토안	비고
3.~4. (생략)	3.~4. (개정안과 같음)	
<u>제21조</u>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생략)	<u>제20조</u>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개정안 21조와 같음)	
<u>제22조</u> (재난수습 홍보) (생략)	<u>제21조</u> (재난수습 홍보) (개정안 22조와 같음)	
부칙 (생략)	부칙 (개정안과 같음)	
<u>【별표 1】</u> 실무반의 임무(<u>제4조제1항제7호</u> 관련)	<u>【별표 1】</u> 실무반의 임무(<u>제5조제1항제7호</u> 관련)	
<u>【별표 2】</u> 재난수습 주관부서(<u>제4조제2항</u> 관련)	<u>【별표 2】</u> 재난수습 주관부서(<u>제5조제2항</u> 관련)	
<u>【별표 3】</u> 대책본부 전결사항	<u>(삭제)</u>	
<u>【별표 4】</u>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u>제8조제1항제1호</u> 관련)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u>별표 6</u> 와 같다.	<u>【별표 3】</u>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u>제8조제1항제1호</u> 관련)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u>별표 5</u> 와 같다.	
<u>【별표 5】</u>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u>제8조제1항제2호</u> 관련)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u>별표 6</u> 와 같다.	<u>【별표 4】</u>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u>제8조제1항제2호</u> 관련)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u>별표 5</u> 와 같다.	
<u>【별표 6】</u>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u>별표 4 및 별표 5</u> 관련)	<u>【별표 5】</u>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u>별표 3 및 별표 4</u> 관련)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3. 12.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표준 조례안 기준 제시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 및 체계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례내용 변경 (안 제2조 제1호)
- 기타 표준 조례안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 변경

3.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여 제호를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또한 재난현장에서의 신속성과 운영체계를 간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표준조례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3. 12.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기준 제시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 및 체계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례비 ·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 (안 제4조)
-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안 제5조)
-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안 제6조)
- 부칙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 추가
- 기타 내용은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였음.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우리시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체계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조례 10개조에서 14개조로 세분화하여 안제3조 및 제4조에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회재난 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개정한 것이며,
-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3. 12.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안산시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 여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원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범위와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용자대상자 범위 및 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범위 (안 제3조, 안 제4조)
- 이용신청 · 이용의 승인 · 이용의 운전자 자격 등(안 제5조, 안 제7조, 안제11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 ·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시 조치(안 제13조, 안 제1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산시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이 없는 주말 및 공휴일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과 공유하여 소외계층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 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한부모·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등으로 범위를 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을 배려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차량의 이용신청, 이용횟수, 기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정하여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전자의 자격 이용자의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이용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현대 생활에서 자동차의 소유는 필수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상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공용차량의 무상 대여는 그들의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요율 증가 등에 대한 세 부적인 대책마련 및 자동차소유자들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시행 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9. 3. 12. 제출되어 3.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규약을 정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기능(규약 제1~4조)
-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규약 제5~9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규약 제10~11조)
-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규약 제12~15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규약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설립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가 화합의 전환기
를 맞고 있는 시기에 동의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